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52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 령 제 3 7 9 호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훈 령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8월 5일

남동구 훈령 제379호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책조정위원회의”를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의”로 하고, “관해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외하고”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규정에”를 “규정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 중 “명기,”를 “기록하고”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호 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4호 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남동구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0.2.28.) 시행으로 남동구 시책 등 일몰여부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기능을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추가 : 제3조제1항
 - 일몰대상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기능에 일몰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 추가 : 제4조제1항제7호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정비 : 제3조제4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 제5조제1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